

창원지방법원 2024. 8. 9 선고 2023가단11941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헌 담당변호사 김수정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창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종득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9.

주 문

- 가.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2. 1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64,671,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64,67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31. 및 2021. 6. 10. B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B는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바탕으로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2017. 4. 3. 및 2021. 6. 14. 합계 2억 원을 대출받았다.

나. B는 2022. 12. 5. 피고와 사이에 B의 소유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는 2023. 1. 3. C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3. 5. 9. C에 합계 179,210,917원을 대위변제하였고, B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2023차전105997호로 대위변제금 등에 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B는 원고에게 179,941,9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2023. 7. 17.자 지급명령이 2023. 7.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치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계약 당시 구상금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불과 약 1개월 후에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신용보증약정에 터 잡아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1) 이 법원의 D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제출명령, 진해구청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C 및 E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의 각 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125,871,8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 E조합 및 C 등에 합계 465,511,587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B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이 사건 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B의 재산상태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여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약 1억 2,580만 원임에도 피고는 그보다 약 25% 저렴한 8,9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점, ② 피고의 배우자 G은 B가 운영하던 H에 근무하여 B를 알게 되었고 이러한 G과 B의 인적관계를 바탕으로 이 사건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악의 추정을 복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원상회복의 방법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계약 당시 E조합 명의의 채권최고액 6억 1,200만 원인 근저당권(채무자 B)이 설정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계약 후 2022. 12. 5. 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었고, 같은 날 E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채무자 피고)이 다시 설정된 사실, B의 E조합에 대한 위 근저당권의 이 사건 계약 당시 피담보채무 액수는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가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25,871,800원에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의 피담보채무 액수인 6억 1,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64,671,800원이 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이 사건 계약을 64,671,8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4,671,8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규도

별지